



붕괴사고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지난 20년간 붕괴사고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 보험제도가 붕괴사고 손해 담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거나 붕괴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않음. 이로 인해 대형 붕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정부당국은 붕괴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법제화 및 보험가입 의무화, 기존 의무보험에 붕괴담보 추가, 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붕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 리스크 관리 미흡한 상태임.

- 1995년부터 2014년 사이 일어난 3,449건의 붕괴사고로 1,033명의 사상자, 3,306명의 부상자, 3천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¹⁾
- 붕괴사고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 규모가 크지 않고 관련 제도가 미흡함.

■ 피보험자 자신에게 붕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동산종합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있으나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²⁾

- 2014년 기준으로 동산종합보험 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15,137건, 230억 원, 풍수해보험 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12,036건, 115.6억 원으로 보험 규모가 크지 않음.
- 풍수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손해만을 담보하고 동산종합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발생한 붕괴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피보험자 자신에게 발생하는 재산 손해만을 보상함.³⁾

1) 국민안전처, 『재난연감』 참조. 본고에서는 건설현장 및 공공 시설물 붕괴사고는 다루지 않음.

2) 보험개발원, 『2015년 손해보험 통계연보』 참조.

3)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인터넷 사이트(<http://www.safekorea.go.kr/idsiSFK/index.jsp>), 동산종합보험은 손해보험회사 약관 참조.

■ 특수건물과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붕괴담보특약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게서 대형 붕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움.

- 특수건물 소유주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각각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화재로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붕괴 손해 담보는 기본담보에서 제외되어 있음(〈표 1〉 참조).

〈표 1〉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근거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무·임의	의무보험	의무보험
담보 대상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 담보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 담보
담보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로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손해 보상 의무화, 붕괴담보특약 가입 가능	다중이용업소가 화재·폭발로 타인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 보상, 붕괴담보특약 가입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각 법규 참조.

■ 정부당국은 대형 붕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붕괴 리스크가 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법제화하고 붕괴담보를 포함하는 배상책임보험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과 다중이용업소 중 붕괴 리스크가 큰 건물에 대해 붕괴 손해 담보를 추가해 대형 붕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해 대형 붕괴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물·시설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사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건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 보험가입 대상 선정 기준 제정이 필요함. **kiri**